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3988 |
|----------|-------|

발의연월일 : 2025. 11. 6.

발 의 자 : 이달희 · 고동진 · 서천호  
정희용 · 박대출 · 김은혜  
김 건 · 김상훈 · 김도읍  
강선영 · 주호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순직군경”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재해사망군경”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공무원이 “순직군경” 및 “재해사망군경”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자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마치 소방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용어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존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재해사망군경”을 “재

해사망군경소방”으로 각각 변경함으로써 보다 직관적인 용어 사용으로 해당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981호)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9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재해사망군경”을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보상) ① 순직 국제협력요원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u>순직군경의 유족</u> 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u>재해사망군경의 유족</u> 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보상) ① -----<br>-----<br>-----<br>-----<br>----- <u>순직군경소방</u> -----<br>-----<br>----- <u>재해사망</u><br><u>군경소방</u> -----<br>-----.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